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9
----------	----

2018.09.19.(수)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상식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18년 8월 28일

다. 회부일자 : 2018년 8월 31일

라. 상정일자 : 2018년 9월 7일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상식 의원)

가. 제안이유

○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 제5조)

○ 안 제5조의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술혁신

실태조사(안 제6조)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안 제7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안 제8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사무의 위탁과 재정지원 사항(안 제9조, 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산업경제전문위원 : 오문석)

-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기술혁신”이란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3.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지도
4.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

5.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
6.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원
7.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① 도지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 특별보증
3.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

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제비용

3. 관련조문

- 안 제7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안 제10조(재정지원) 제1항
 -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 가. 재정수반요인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비
- 나. 추계의 전제 : 이노비즈(Inno-Biz) 인증(신규, 연장)획득 지원, 혁신중소기업 협업 비즈매칭 박람회 지원 등
- 다. 추 계 결 과 : 2019년부터 향후 5년간 세출 310백만원 정도 소요
- 라.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세 출	310,000	52,000	57,000	62,000	67,000	72,000
시책추진사업비	310,000	52,000	57,000	62,000	67,000	72,000

6. 작성자 : 경제통상국 전략산업과장 정경화(220-3410)

관련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삭제 <2016.1.27.>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

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5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